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8. 30.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29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18. 강남구청장(의약과)
- 나. 상정의결
-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8. 30.)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보건소장 : 양오승)

-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위임 사무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로 정함 (안 제2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고 규정함 (안 제3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3. 7. 14. ~ 2023. 8.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출 제외대상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인 「지역보건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법률 개정사항이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개정사항 중 위임 규정인 법 제34조의 과태료 관련 사항을 근거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 본 조례안 제2조에 따른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는데 이는 법 제34조 개정에 따른 것임.

현행 조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이상 위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00	300
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	300

개정 조례안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제1항	1,000	3,000
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300
다.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300

-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근거로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총 1건으로 많지 않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4조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집행 조례안’ 이므로 큰 쟁점은 없으나, 서초구,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동작구, 강서구 등 우리구와 인접한 타 자치구들의 부과방식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를 2단계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타자치구처럼 3단계로 하는 것이 타당한 지의 논의는 필요할 것임.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29호

제안일자 : 2023.8.30.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분화를 위해 <별표>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금액 및 단계를 3단계로 세분화(안 별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제1항	1,000	2,000	3,000
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제1항	1,000	2,000	3,000
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의안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의약과 행정8급 황예진(02-3423-7142)